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무와 당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2.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⑥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 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5,000톤
0706	90	기타			
		1. 무		0	8,000톤

[별표 2]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별표 3]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9,500,000 배럴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0	

[별표 4]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길라(<i>Anguilla</i>)속]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 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하 다)		3	50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 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 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 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0,000톤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칩뿌리·살렘(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10	60,000톤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100,000톤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			

		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 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80,000톤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1,000,000톤
		3. 기타	가공용	0	1,900,000톤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식품용	0	
3505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 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			

		화 전분], 전분·텍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190,000톤
3505	10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식품용[텍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젠)을 제외한다]	0	
3505	20	글루(glue)	식품용	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200,000톤
1214		스위드(swede)·멥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0,000톤
		4. 기타	사료용	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701	99	기타		5	100,000톤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5,500톤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	90	기타			

		1.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 용성 고형분이 100 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009		과실 ·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 채 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1	오렌지주스			
2009	11	냉동한 것		10	6,000톤
2009	90	혼합 주스			
		1. 과실로 만든 것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10	
2009	4	파인애플주스			
2009	41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10	1,600톤
2009	49	기타		10	
2101		커피 · 차 · 마테(maté)의 추출 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 료로 한 조제품, 커피 · 차 · 마 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 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볍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1. 인스턴트 커피	0	2,500톤	
		2. 기타	0	2,500톤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 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160,000 킬로리터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			

		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40,000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용 비트펄프(beet-pulp)	0	수입 전량
			2. 버섯 재배용 비트펄프(beet-pulp)	0	25,000톤
2303	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1. 사료용		0	35,000톤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사료용	0	2,000,000톤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	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25,000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사료용	0	12,000톤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	2	형석(螢石)			
2529	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1. 가루		0	20,000톤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200,0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 금속 산화물			
2811	1	그 밖의 무기산			
2811	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1. 반도체 제조용	0		수입전량
2825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 금속산화물 · 금속수산화물 · 금속과산화물			
2825	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2. 수산화리튬	0		30,000톤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 전량
2827		염화물 · 산화염화물 ·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 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 산화요드화물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		

		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 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 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 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 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 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 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 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0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초산아밀, 초산이소아밀, 초산메틸, 초산이소부틸, 초산 2-에톡시에틸은 제외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젠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			

		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젠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젠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			

		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 소화유도체			
2920	2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 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 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 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 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 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 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 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 미돈(ISO)	포스파미돈(ISO) [「농약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 劑)로 한정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		

		것으로 한정한다)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1. 티오키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디티오키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30	티우람모노숄파이드 · 티우람디숄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숄파이드	티우람디숄파이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4	비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2931	4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0		

2931	5	할로젠화 유기인 유도체	으로 한정한다)			
2931	54	트리클로르폰(ISO)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	1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2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		

		것으로 한정한다)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1-비닐-2-피롤리돈은 제외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 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 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0	

		으로 한정한다)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4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2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말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808	92	살진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3808	93	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 조절제	제초제, 식물성장 조절제[「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 록된 농약원제(農 藥原劑)로 한정하 다]	0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 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 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 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향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 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			

		산염			
2841	6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2841	69	기타	아망간산염(이차 전지 제조용 양극 활물질로 한정한다)	0	1,000톤
2841	90	기타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10,000톤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5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59	기타	자일릴렌다이아민(XDA)[자일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XDI)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 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2. 기타		0	수입 전량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 이암모늄)	비료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3.5	수입 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3815	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백금촉매(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4톤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흑연화합물(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전해액과 첨가제 및 그 중간조제품(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82,620톤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펄프의 것이 아닌 것	0	32,400톤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6,200톤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5002	00	생사(낀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데 시텍스 이하인 것	0	200톤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 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 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 외한다)			
5205	1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 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	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 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 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5205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수입 전량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	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1. 이형단면인 것	0	수입 전량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3. 기타	0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연료전지 전극기재 제조용	0	수입 전량
7006	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 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로빙(roving)·직물]				
7019	6	기계적으로 집착한 직물				
7019	63	촉촉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 않 은 것]	반도체 제조용으 로서 폭이 30센티 미터 초과인 것 (평직물로서 1제 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 며, 구성하는 단사 가 136텍스 이하 의 필라멘트인 것 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 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으로 한정한다)				
7110	1	플라티늄(platinum)				
7110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 양인 것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12.8톤
			2.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0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용	0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9	기타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90	기타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OLED 제 조용으로 한정하 다)	0	수입 전량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 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 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 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용	0	수입 전량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 을 포함한다)			
7606	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자동차 차체 제조 용(미국 알루미늄	0	8,500톤

			협회 표준 규격 A 6000 계열로 한정 한다)		
8007	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 노광공정 에 사용되는 것	2	수입 전량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	수입 전량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 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 기나 청정기			
8421	9	부분품			
8421	99	기타	흡착제(이차전지 격리막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30	압연기용 롤	단조제의 것(제철 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3	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 나. 기타	전극막 접합체(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	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 모터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0	4,097톤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	19	기타	초고온탄화로(수소연료전지제조용 기체확산층(GDL)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	4	계전기(繼電器)			
8536	49	기타	고전압 릴레이(환	0	1,145톤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연결용으로 한정한다)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별표 5]

202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6]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	-----
율 및 한계수량은 <u>별표 1부터 별</u>	----- <u>별표 1부터 별</u>
<u>표 18까지</u> 와 같다.	<u>표 6까지</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1